

영국사례 1

범법행위를 파헤치기 위한 공익 목적이라면 범법자에게 돈을 지불했더라도 보도윤리강령 위반이 아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신청인 Mr. Clive Soley가 Evening Standard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위 신문이 지난 2005년 3월 23일 게재한 “우리는 총리의 여권을 2,000파운드에 산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범법자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취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보도윤리강령 제16장 ‘업무 규약(code of practice)의 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기사는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세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기 위해 가짜 서류에 돈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불만신청인은 위 신문사가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범법에 대해 경찰에 먼저 알려 경찰이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경찰에 연락하기보다는 그보다 앞서 범법자에게 돈을 주고 위조 여권을 발급받았

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보도윤리강령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vening Standard는 불만신청인이 규약의 조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신들이 지불한 돈은 유죄로 명백하게 죄가 인정된 범법자에게 지불된 것이 아니며 기사 역시 이 범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범죄라는 개념을 찬미하거나 미화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사는 이 기사가 쓰여진 첫날 경찰에 연락을 취했고 경찰도 함께 사건을 처리해 만족스러웠다고 강조했다. 신문사 측은 누가 먼저 연락을 취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 기사는 명백히 중요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을 다룬 것이고 지불된 돈은 기자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범법행위를 파헤치는데 쓰여 졌기

때문에 보도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도윤리강령 제16조는 범죄를 이용하거나 범죄의 개념을 찬미·미화시키는 사진이나 그림 혹은 정보를 위한 돈의 지불을 금지시키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돈이 그 개념과 명백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위원회는 이 돈이 정당한 공공의 이익과 관심이 쏠려 있는 신분증 위조에 대한 증거물을 구하는데 쓰였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 돈의 지불은 중요한 증거물을 입수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였고 유죄를 선고받은 범법자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를 도운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이 신문사 측이 경찰에 먼저 통보해 경찰이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규정에는 이것에 대해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신문사에서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불만신청인이 기사가 담고 있는 사회적인 관심사를 생

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범법자들과 그들이 만드는 위조 서류에 대한 이슈는 이미 사회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으며 신문사의 행동은 경찰에게 범법의 행위가 있음을 알림으로 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고 정당화 될 수가 있다.

위원회는 신문사가 경찰에 정보를 넘기게 됨으로 해서 범법자들에게는 자신들이 경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의를 주고 있는 등 공익에 부합되는 정당한 언론 활동이라고 판단,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영국사례 2

고지(告知)의 목적으로 제작된 전단지는 정보를 공공화 시킨 것이므로 그 안에 포함된 사생활 정보는 사적정보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Coleraine에 거주하는 Ms. Merlyn Brown이 Ballymoney Chronicle 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였지만 신문사에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Ballymoney Chronicle지가 지난 2005년 2월 16일에 게재한 “베를린의 마라톤 노력”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부정확하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보도윤리강령 제1장 ‘정확성’, 제3장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정보를 얻은 것에 대해 제10장 ‘은밀한 장비 및 속임수’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자선기금을 모으기 위해 런던 마라톤 대회에 출전키로 하고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가족과 친구에게 줄 적은 소량의 작은 전단지를 제작하였다. 그런데

이 전단지의 정보가 불만신청인의 동의없이 위 신문사 1면 기사에 인용되었고 따라서 10번째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동의없이 게재된, 불만신청인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불만신청인의 사진을 삽입한 기사가 독자들로 하여금 불만신청인이 인터뷰에 응했다는 듯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불만신청인은 집 전화번호를 기사에 삽입한 것이 장난전화로 이어졌고 불만신청인 가족의 건강문제에 대한 정보를 기사에 집어넣은 것도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allymoney Chronicle지는 이 기사의 취지는 이번 자선기금 마련을 장려하는 것이고 지역의 따뜻한 사연을 부각시키는 것이었

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 신문사는 불만신청인의 사무실에서 당사의 사진기자에게 불만신청인이 직접 전단지를 전달했음을 증명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이어 신문사는 50부의 전단지가 만들어졌고 그 중 35부가 가족, 친구, 지역 상점에 배포됐기 때문에 이 정보는 공공의 것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신문사는 공공의 정보라고 판단했음에도 원고와의 제대로 된 접촉없이 기사화된 것을 불만신청인에게 직접 해명하고자 했으며 편집장이 기사화에 대한 사과의 편지를 불만신청인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만신청인은 이 편지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하고 사진기자가 아닌 신문사의 한 리포터가 불만신청인의 사무실에서 전단지를 가져가 미안하다고 불만신청인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3번째 조항을 어겼다고 결론지었으나 신문사에 책임을 묻지 않았고 1번째와 10번째 조항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3번째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 기사에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사적인 것이 아니지만 몇몇의 것 - 특히 불만신청인의 전화번호 - 은 사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불만신청인이 직접 연락을 해서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는 것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은 규약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불만신청인이 마라톤에 참가하여 자선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한 전단지에는 비록 한정된 수량이라도 정보를 공공화 시킨 것이라고 간주하고 이 사실은 편집장으로 하여금 불만신청인이 전화번호를 포함한 정보를 사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정황이 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신문사의 행동은 기사의 긍정성을 고려할 때 비록 불만신청인의 의도와는 어긋났지만 후에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 그다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불만신청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면서 규칙을 위

반한 것은 무심코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 신문사에게 3번째 조항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한편 위원회는 첫번째 조항에 대해서는, 물론 불만신청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신문사가 전단지의 내용을 정확히, 사실만을 기재하였으므로 마라톤에 대한 정보는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신문사에서 전단지를 어떻게 획득하였는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나 위원회가 이 증거물에 대해서 수사할 법적인 능력이 없으므로 10번째 조항은 결론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

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WA Business News 측은 SOS의 견해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이전 신문에 그러한 견해들이 소개됐다고 밝혔다. 또 신문사 측은 3월 17일자 기사와 관련해 SOS에 접촉했더라도 그 기사 내용에 있어 별다른 변화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기사에는 정부 조사 결과를 비판한 Scarborough Beach Association으로부터 취재한 사항만 포함됐다.

신청인이 불만을 제기한 기사에는 해당 이슈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의 중의 하나다. 이 신문은 연안 개발 포럼을 지원했고 2004년 10월에는 연안 개발에 대한 4 페이지짜리 특별 기사에서 SOS 행동 그룹을 언급하고 인용하기도 했다.

신청인은 WA Business News의 편집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WA Business News가 편향된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WA Business News가 진정한 신문이 아니라 생각없는 기업인들을 위한 선전지”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신문에 실리지 않았다. 이전에 SOS 그룹의 견해를 담은 기사가 이미 나갔다는 항변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은 그 기사를 읽지 못했으며 아마도 3월 17일자에 실린 것처럼 고층 지지자들에게만 균형을 맞춘 기사였을

호주사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기사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호주신문평의회는 WA Business News가 2005년 3월 17일자에 게재한 ‘Scarborough 시(市)의 건물 고도 제한’ 관련 기사에 대해, Ben Grummels가 제기한 불만신청을 기각했다. 부동산 섹션에 실린 문제의 기사는 “Stirling 시가 의뢰한 보고서가 Scarborough 시의 고도 제한을 추천한 주(州) 정부의 조사 결과를 비판했다”고 기록했다.

기사에서 지목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신청인은 그 기사가 (신청인의 표현으로는) ‘부정적인’ 부동산 개발 계획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취재한 발언만을 실었기 때문에 일방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청인은 충분히 계획되지 못한 개발에 반대하는 Save Our Sunset Coast Group(SOS) 대표자들과의 인터뷰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신문평의회는 WA Business News가 이론(異論)이 분분한 연안 계획 관련 이슈의 모든 관련 진행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도해 왔다고 판단했다. 또한 호

주신문평의회는 신문이 나올 때마다 모든 이해관계자와 이익단체들의 목소리를 다 담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호주신문평의회는 신청인의 신청을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뉴질랜드사례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했더라도 언론사의 책임이 완전히 면해진 것은 아니다

뉴질랜드신문평의회는 Ashburton Guardian이 지난 2005년 1월 26일 “빨간 테이프는 행진의 취소를 알린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2005년 1월 27일 “지역사회의 반대함은 살아있고 훌륭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한 노동부의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위 신문사는 행사 취소의 이유를 애쉬버튼 스코틀랜드인 동호회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이하 OSH : 직업적 안전 및 보건부)이 행사를 위해 요구한 자격에 미달되었다고 보도했다.

불만신청인은 신문사가 파이프 밴드 페스티벌 취소의 책임을 잘못 된 쪽에다 돌려 명예가 훼손되었고 오보로 인해 독자가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기사가 나온 후 불만신청인은 OSH는 행사 취소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편지와 성명문을

신문사에 보냈고 책임이 있다면 지역 도로 관리 공단이나 지역 의회에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성명서는 다음호의 신문 마감시간이 지난 후에 신문사에 들어갔다. 아쉽게도 신문사에서는 이어질 사실을 준비하였고 다음호 신문에 지체없이 보도되었다. 이 사실은 전날의 기사와 같은 느낌을 유지하였다.

갓 부임한 편집장은 담당 기자가 행사 조직위원회의 설명만 취재하고 OSH에는 어떠한 문의를 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였다. 편집장의 대리인은 잘못된 정보를 발표한 것에 대해 불만신청인에게 사과를 했다. 또한 파이프 밴드 도로 행진은 주말에 열렸고 월요일자 신문에는 “도로 행사에 대한 규칙이 바뀌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정확하게 기재되었다. 편

집장은 정정보도가 앞서 발생한 오보를 충분히 만회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문사는 Land Transport Safety Authority(도로 교통 안전 기관)의 조건을 지역 기관에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행사가 지연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불만신청인의 말대로 이 조건을 강요한 것은 Ashburton District Council(애쉬버튼 지역 의회)이었다는 것 또한 확인했다. 신문사는 기사 끝부분에 “노동부의 OSH는 도로 행사 규칙에 대한 책임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보도했다. 뉴질랜드 언론평의회에서 판단해 볼 때 불만신청인의 회답은 확실히 정당한 것이었다.

편집장이 기자가 OSH의 입장을 취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후에 정정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평의회는 사실에 대한 실수가 생겨났고 그 결과로 후에 쓰여진 사실 또한 같은 실수를 범했으므로 이것은 신문사가 당연히 오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라고 판단, 불만신청인의 불만신청을 인정하였다.

이 소송을 판결한 언론평의회 멤버들은 Sir John Jeffries (의장), Suzanne Carty, Aroha Puata, Ruth BAuddicom, Alan Samson, Murray Williams, Denis Mclean, Keith Less, Terry Snow, John Gardner 이다. □